

1. 개정이유

위·수탁차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수탁계약서 항목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위험물 운송 차량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수탁계약서 항목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제21조, 제41조의16)

1)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외 부당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운송 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모든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제재 규정 마련

나. 주선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제41조)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

다.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제53조)

1)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화물차보다 위험성 또는 피해규모가 커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제41조의16제3호 외의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

제41조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의16제3호 중 “금전지급 및”을 “위·수탁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사항(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등”으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인 사람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별표 2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제41조의16제3호 외의 금전을 요구한 경우	제21조제26호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

별표 2 비고 제2호 전단 중 “2년”을 “2년,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9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3호, 별표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2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 25. (생 략) <u><신 설></u>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 ----- ----- ----- ----- ----- ----- 2. ~ 25. (현행과 같음) 26.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제41조의16제3호 외의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	제41조(준용규정) ----- ----- ----- ----- ----- ----- ----- ----- -----

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 --제3항----- ----- --. ----- ----- ----- -----.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3. <u>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u> 4. ~ 13. (생략)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 ----- ----- -----. 1.·2. (현행과 같음) 3. <u>위·수탁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사항(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등 채권·채무</u> 4. ~ 13.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 6. (생략) ③·④ (생략)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② ----- 법 제47조의2제3항----- ----- -----.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생략)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④ (생략)	② -----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인 사람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	---